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3월 03일 05시 35분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이륜차신고 | 3 |
| 대 상 | 3 |
| 신고기간 | 3 |
| 신고장소 | 3 |
| 이륜자동차사용변경신청서 기재방법 | 3 |
| 구비서류 | 4 |
| 과태료 | 4 |

| 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자동차등록 | 건설기계등록 | 이륜차신고 | 과태료 | 취득 등록면허세 |
| 검사/의무보험 | 자동차등록현황 | 민원서식 | 자주하는 질문 | 오시는 길 |

- 사용신고
- **신고사항변경**
- 사용폐지신고
- 신고필증/번호판/봉인재교부
- 용어해설

대상

- 등록된 이륜차의 신고사항이 변경되면(사용본거지,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, 소유권 이전)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신고기간

| 구분 | 기간 |
|------------------|--|
| 양도·양수(매매) 증여, 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매수한 날(잔금지급일)부터 15일 이내 ▪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▪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|
| 상속 |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|

신고장소

-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고

이륜자동차사용변경신청서 기재방법

- 변경전 란에는 매매는 매도인(양도인) 인적사항, 타시도 전입은 전입전 주소, 상속은 전소유자, 기타변경사항은 변경전 사항을 기재하시고
- 변경후 란에는 매매는 매수인(양수인) 인적사항, 타시도 전입은 전입신고 한 주소 상속은 상속받으자 인적사항, 기타변경사항은 변경후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
- 신고인은 신고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민원인 신분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매매의 신고장소는 소유할 자 관할 관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.

구비서류

| 구 분 | | 구비서류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매매 (양도, 양수) | 매도인 (양도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▪ 양도증명서(매매계약서) ▪ 인감증명서(법인 : 법인 인감증명서) ▪ 법인 : 등기부등본 ※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·읍·면·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·양수인이 날인(도장)하여야 유효합니다. |
| | 매수인 (양수인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▪ 양수인명의 의무보험(대인,대물)보험 가입증명서 ▪ 번호판(시·도가 다른 경우) ▪ 법인 : 등기부등본 ▪ 신분증(위임시 : 위임장, 위임받는자 신분증) ※ 전라남도 번호판도 번호변경 가능합니다.(구 번호판 지참) |
| 타시도 전입신고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▪ 사용신고필증 ▪ 의무보험(대인,대물)보험가입증명서 ▪ 법인 : 등기부등본 ▪ 번호판 ▪ 신분증(위임시 : 위임장, 위임받는자 신분증) |
| 상속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▪ 제적(호주사망시) 또는 호적등본 ▪ 상속협의서(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-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) ▪ 사용신고필증 ▪ 상속받는자 신분증 ※유의사항 ▪ 상속자 : 배우자 및 직계비속 ▪ 상속순위(상속자가 없을 경우 : 1)직계존속, 2)형제·자매, 3)4촌이내 방계혈족 ▪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폐차가능 (사용폐지 절차에 따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.) |
| 기타사유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 변경 신청서 ▪ 사용신고필증 ▪ 기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(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시 고를 한 것으로 본다.) ▪ 신분증 (위임시 : 위임장, 위임받는자 신분증) |

과태료

| 구 분 | 기 간 | 금 액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신고사항 변경신고 |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| 2만원 |
| |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내 | 6만원 |
| |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상 | 10만원 |

Yeosu Web Contents

